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17.) 상정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17.)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박 상 설)

가. 제안이유

- 1995년도에 범정부적인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현재까지 시민의 신고건수가 없는 등 시책의 효과성이 상실되고 시정 운영의 비생산성이 초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 폐지 사유는?	○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시정운영에 비생산성이 초래되어 폐지코자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있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출년월일 : 2008. 10. 7.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1995년도에 범정부적인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현재까지 시민의 신고건수가 없는 등 시책의 효과성이 상실되고 시정 운영의 비생산성이 초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 첨부: 부천시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시민보상금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시민보상금지급 조례

[1995. 01. 14. 조례 제1320호]

[1996. 07. 18. 조례 제1435호]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2001. 01. 12. 조례 제1801호]

제1조 (목적) 생활개혁의 조기정착 및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보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이하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타 기초질서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 따른다.

1. 불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자
2.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
3.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위험요소

제3조 (신고 접수처리) ①생활개혁 위반사항을 발견한 시민은 근무시간 중에는 시·구청의 민원실에, 비 근무시간에는 시·구청의 당직실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생활개혁위반사항 시민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 접수처리 등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된 생활개혁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소관부서(신고사항의 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장의 책임 하에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20,000원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하되,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행정조치된 사항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경미한 사항은 보상금 대신 1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생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공보, 사회복지, 환경·위생, 여성복지업무 및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은 일시불로 신고자의 구좌에 입금한다.

제7조 (신분보호) 부천시 생활개혁 위반사항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1.01.12>

생활개혁 위반사항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생활개혁 위반행위 유형	보상금액
1. 삭제 (2001.1.12)	
2. 삭제 (2001.1.12)	
3. 삭제 (2001.1.12)	
4. 삭제 (2001.1.12)	
5. 삭제 (2001.1.12)	
6. 불법, 부당요금 징수행위자	20,000원이하
7. 삭제 (2001.1.12)	
8.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	20,000원이하
9.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위험 요소	20,000원이하
10. 삭제 (2001.1.12)	

